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구 미 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해당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시민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필요함
지역간 균형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 위치 : 옥계동 542번지 일원(대백운동장 내)

○ 대상 : 연면적 1,000m²(지상1층)

○ 사업기간 : 2025~2027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도비 1,500, 시비 3,500)

※ 사업비 산출내역 : 공사비 4,600

설계비 250

감리비 150

○ 기준가격 : 5,000백만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등

○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전환사업 예산신청 : '24. 04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 '24. 9월~10월
-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 '24. 10월~12월
- 건축기획용역 시행 : '25. 01월~06월
- 설계공모 시행 : '25. 07월~09월
- 설계용역 시행 : '25. 10월~'26. 02월
- 건축협의를 등 행정절차 완료 : '26. 03월~'26. 04월
- 공사 착공 : '26. 05월
- 공사 준공 : '27. 05월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	1,000	5,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1	1,000	5,000	
	토지 건물 기타			

취득재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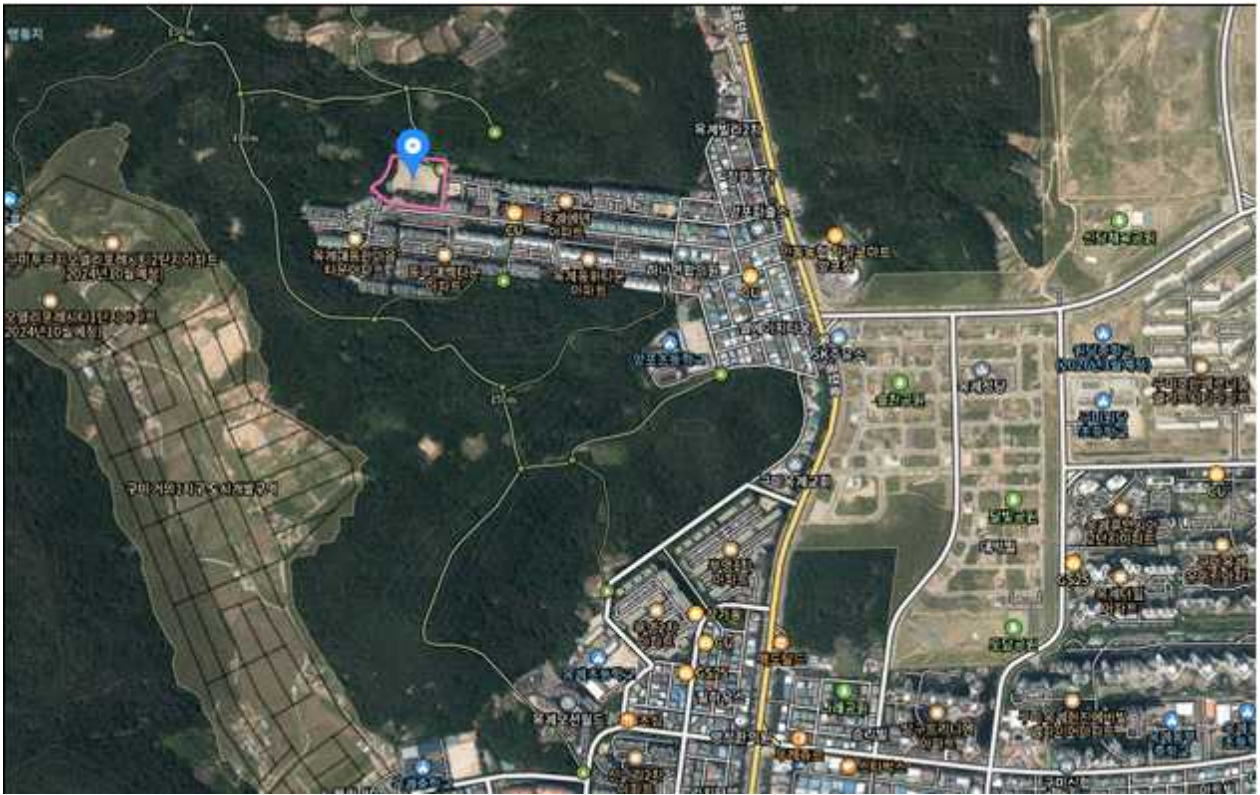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사유	재산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재지	수량(m ²)					
계			1,000	5,000				
취득	건물	옥계동 542번지	1,000	5,000	2027년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구미시	신축

위치도

○ 소재지 : 옥계동 542번지(대백운동장)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안)에 의거하여 각 시설별 공사를 적용하여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공사	0	2,300	2,300			4,600
	◦ 설계	250	0	0			250
	◦ 감리	0	150	0			150
	◦ 보상	0	0	0			0
	총계	250	2,450	2,300			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0	0	0			0
	도 비	75	735	690			1,500
	시 비	175	1,715	1,610			3,500
	민 간	0	0	0			0
	기 타	0	0	0			0
	합 계	250	2,450	2,300			5,000

5. 부대의견 :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담당자 이덕수(054-480-492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총계		50	
공사비	소계	46	
	건축 전기 통신 소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책정 가이드라인 참조	$1,000\text{m}^2 \times 3,680,000\text{원}/\text{m}^2 = 36.8\text{억 원}$ $1,000\text{m}^2 \times 552,000\text{원}/\text{m}^2 = 5.5\text{억 원}$ $1,000\text{m}^2 \times 138,000\text{원}/\text{m}^2 = 1.4\text{억 원}$ $1,000\text{m}^2 \times 230,000\text{원}/\text{m}^2 = 2.3\text{억 원}$	46
보상비	소계	0	
	토지	해당없음	
	지장물	해당없음	
용역비	소계	2.5	
	실시 설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4,600,000,000\text{원} \times 5.43\% = 2.5\text{억 원}$	2.5
감리비	소계	1.5	
	감리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주감리 적용(실비정산가산식)	$150,000,000\text{원} \times 1\text{식} = 1.5\text{억 원}$	1.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권 순 모)
	팀 장	김 은 화 (김 현 준)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이 덕 수) (480-5842)